20011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

이 내용은 2011년도 달라지는 주요 산림정책을 정리한것입니다

< 양식 1 >「주요 이슈」

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

산림청 산지관리과 (☎ 042-481-4141)

□ **30ha이상**의 규모로 **산지전용**이나 **산지일시사용**을 하려는 경우에는 미리 **산지전문기관**으로부터 그 **전용이 타당한지에 대한 조사**를 받도록 변경하였습니다.

○ 최근 몇 년간 산지전용을 하는 과정에서 중요한 허가기준이 되는 **산림조사의 객관성에 대한 문제**들이 **지속적**으로 **제기**되어 이를 개선하고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제도를 도입하게 되었습니다.

○ 2011.7.1**일**부터는 **30ha이상**의 산지전용허가나 산지일시사용허가를 신청하는 경우에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종합적인 타당성 조사를 받아 그 결과를 신청서에 첨부하여야 합니다.

○ **산지전용타당성조사의 결과**는 「공공기관의 정보공개에 관한 법률」에 따라 산지전문기관이 모두 **공개**토록 하여 **공정성**과 **객관성**을 유지토록 하였습니다.

☞ 30ha 이상의 산지전용허가시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타당성조사를 받아야 함

<산지전용타당성조사제도 도입>

□ **추진배경 : 산지전용허가의 핵심기준이 되는 "산림조사서" 작성에 대한 사업자와 조사자와의 결탁소지를 없애고, 전문성과 객관성이 담보된 산지전문기관이 타당성조사를 실시함으로써 합리적이고 효율적으로 산지전용 허가가 이루어질 수 있도록 함**

□ **주요내용**

① 산지전문기관에 산지전용타당성조사 신청(신청자가 비용 부담)

※ 조사내용 : 산림조사, 표고·경사도조사, 보전산지편입 비율 등 허가기준 검토

② 산지전용허가 신청(타당성조사서 첨부)

③ 중앙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(필요시 산지전문기관의 조사의견 청취)

□ **시행일** : 2011.7.1

산지복구공사의 감리제도 도입

산림청 산지관리과 (☎ 042-481-4141)

□ 산지전용, 산지일시사용 또는 토석채취 후 **산지복구 공사**에 대하여 복구가 **적정하게** 이루어졌는지 **확인**하기 위하여 **산지복구감리제도**를 도입하였습니다.

○ 그동안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 공무원이 지도감독 및 준공검사를 실시하여, 담당공무원의 **전문성 부족** 등으로 인하여 **체계적 복구**에 **한계**가 있었습니다.

○ 이를 개선하기 위해 일정 면적 이상의 산지복구 공사에 대하여는 산림기술사 등 **전문인력**이 감리를 실시함으로써, 산지복구의 **부실을 방지**하고 **생태적으로 건강한 산지로 복구·복원할 수 있도록** 하였습니다.

☞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

<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>

□ **추진배경 :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담당공무원이 복구공사를 지도감독하고 준공검사를 수행하고 있어 공사전반에 대한 전문성 있는 지도·감독에 한계가 있었음**

□ **주요내용**

일정면적 이상의 산지를 복구하는 공사의 경우 산림기술사, 산림전문분야 엔지니어링 사업자, 다른 법률에 따라 산지복구공사의 감리를 할 수 있는 자의 감리를 받아야 함

□ **시행일** : 2011.7.1

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및 처벌규정 신설

산림휴양등산과 (☎ 042-481-8876)

□ 누구든지 **숲길** 또는 **주변의 토지 안에서** 다음 사항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하여서는 아니 됩니다.

○ **숲길을 훼손**하는 행위와 다른 사람 **소유의 건조물·농작물**이나 그 밖의 **재물을 손괴**하는 행위

○ 오물이나 쓰레기를 버리는 행위나 설치된 표지를 옮기거나 더럽히거나 망가뜨리는 행위

□ **숲길 훼손**과 **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·농작물 등 재물 손괴행위**를 한 사람은 **3년이하의 징역**이나 **700만원이하의 벌금**에 처하게 되며, **오물·쓰레기 버리는 행위**와 **표시판 이전·파손 등의 행위**는 **20만원이하의 과태료**에 처하게 됩니다.

☞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함

<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>

□ **추진배경 : 숲길 이용자의 부주의 또는 수요 급증으로 인한 조성된 숲길의 훼손과 농작물 피해·오물투기행위, 안내판 등의 손괴행위를 사전 예방하기 위함**

□ **주요내용**

① 숲길 훼손행위,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·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
- 위반시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이하의 벌금에 처함

②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,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에 대해 처벌규정 도입
- 위반시 20만원이하의 과태료 부과처분

③ 이용자의 책임과 의무 조항을 둠으로서 질서유지와 이용체계 확립으로 서비스의 질 제고에 기여

□ **시행일** : 2011. 7. 1. 이후 예정

청정임산물이용증진
(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)

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☎ 042-481-4207)

□ 생산자와 소비자를 직접 연결하는 **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** 구축·운영으로 임업인 매출확대 및 소득증대에 기여하겠습니다.

○ 그 동안 개별 임가에서 홈페이지를 구축하여 통신판매를 하였으나, 대부분의 경우 사업자등록 및 결재대행 등록 등의 번거로움으로 인해 인터넷 거래를 기피해 왔습니다.

○ 이를 시정하기 위하여 구축한 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으로 전자상거래 행정대행, 판매대금 관리, 배송 확인, 홍보 및 마케팅 교육 등 **다양한 서비스를 무료로 제공**합니다.

※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:
www.esupro.co.kr 또는www.esupro.com

○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홈쇼핑몰에 **입점을 희망하는 임가는 사업자등록증**을 갖추어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로 연락하여 주시기 바라며, 국민여러분께는 임가에서 생산한 질 좋은 청정 임산물을 시중보다 저렴하게 제공하겠습니다.

○ 임업인과 국민여러분의 많은 이용을 부탁드립니다.

☞「e 숲으로」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·운영

<청정임산물이용증진>
(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운영)

□ **추진배경 : 기존에 개별 임가에서 사용하던 홈페이지는 대금정산, 세금납부 등 정산절차가 까다로워 임업인들이 전자상거래를 기피**

□ **주요내용**
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·운영으로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무료 대행

□ **시행일** : 2011.1.1

< 양식 2 > 「신·구 대비표」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1. 산지전용타당성 조사제도 도입	<신 설>	o 30ha 이상으로 산지전용허가 또는 산지일시사용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미리 산지전문기관으로부터 전용 또는 일시사용의 타당성에 관한 조사를 받아야 함 ☞ 30ha이상의 산지전용허가 신청시 산지전문기관의 타당성조사 결과 첨부	산지관리법 제18조의2 ('11.7.1) 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2. 산지복구공사 감리제도 도입	< 신 설 >	o 산지전용 또는 토석채취 후의 산지복구 시 재해발생, 경관파괴, 수질오염 등의 부실을 방지하기 위하여 산지복구공사에 대한 감리제도 도입 ☞ 일정규모 이상의 산지복구공사의 경우 전문가에게 감리를 받아야 함	산지관리법 제40조의 2 산지관리법 시행령 제48조의 2 ('11.7.1) 산림청 산지관리과 (042-481-4141)
3. 숲길 주변에서의 금지행위 규정	< 신 설 >	o 숲길 훼손행위, 다른 사람 소유의 건조물·농작물이나 그 밖의 재물 손괴행위, 오물이나 쓰레기 투기, 표시판 등 손괴행위 금지 및 처벌규정 도입 - 3년이하의 징역이나 700만원 이하이 벌금 또는 20만원 이하의 과태료 등 ☞ 숲길 주변에서 금지행위를 하면 처벌함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제23조의 3, 제31조의 2, 제32조 ('11 하반기)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887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4. 청정임산물이용 증진	ㅇ <신 설> ㅇ 임산물표준출하지원, 포장디자인개선, 공동선별비지원 등으로 구분 지원 ㅇ 유통기반지원 - 지원차량 : 일반화물 - 지원대상자 : 분재협회 - 보조율 국고 50: 지방비 - : 자부담50	ㅇ 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운영 - 임산물 소비촉진을 위해 생산자 전자상거래 운영관리 대행 지원 ☞「e숲으로」 임산물 직거래장터 쇼핑몰 구축·운영 ㅇ 임산물표준화 지원사업으로 일원화하여 통합지원 ㅇ 임산물유통기반지원(유통차량) - 지원차량 : 냉동탑차, 일반화물 - 지원대상자 : 임업인, 영농조합법인 - 보조율 : 국고 30: 지방비 20 : 자부담 50	농림수산사업시행 지침 ('11.1.1) 산림청 산림경영소득과 (042-481-4207)
5. 조림사업 원가계산 조달청 기준 적용	ㅇ 조림 설계지침의 원가계산 제비율을 조달청 기준과 다르게 적용 - 이윤율 7%, 일반관리비 4.7%, 간접노무비 5% 등	ㅇ 조림사업 원가계산서 작성시 「조달청 토목공사 원가계산 제비율 기준」으로 적용 - 이윤율 15% 이하, 일반관리비 6% 이하, 간접노무비 11% 등	조림사업 설계·감리시행지침 ('11.1.1) 산림청 산림자원과 (042-481-4185, 4183)
6.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	< 신 설 >	ㅇ 관계부처 합동으로 국무회의(2010.7.6)에 보고한 「수요자 중심의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효율화방안」의 후속조치로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추진시 정부지원이 필요한 취업취약계층을 위주로 고용하기 위하여 취업취약계층 고용비율 특정(산림청 재정지원 일자리사업 : 3개) - 숲가꾸기, 산불전문예방진화대 : 50% - 산림서비스증진 : 40%	2011사회서비스일자리사업 추진 종합지침 ('11.1.1) 산림청 녹색일자리창출팀 (042-481-4037, 4039)
7. 숲길의 휴식기간제 등 도입	ㅇ 등산로의 휴식년제 실시	ㅇ 숲길의 휴식년제 또는 휴식기간제 병행 실시	「산림문화·휴양에 관한 법률」 제25조 ('11 하반기) 산림청 산림휴양등산과 (042-481-8876)

구 분	종 전	달라지는 내용	관련 법규 (시행일) 관계 부서
8. 사방지 지정·해제 고시 등 시·도지사(지방산림청장) 이양 및 원인자 부담제도 폐지	○ 사방지 지정·해제 고시 등 산림청장 권한을 시·도지사(지방산림청장)에게 위임 ○ 다른 공사 또는 행위로 인하여 국가사방사업이 필요하게 된 경우 당해 소요 비용의 전부 또는 일부를 당해 공사의 시행자 또는 행위자에게 부담(원인자 부담 제도)	○ 사방지 지정·해제 고시 등 산림청장 권한을 시·도지사(지방산림청장)에게 이양 ○ 원인자 부담 제도가 산지관리법에 의한 복구비를 예치한 경우 면제됨으로 실효성이 없어 폐지	사방사업법 제4조, 제19조 등 ('10.9월 국회제출) 산림청 치산복원과 (042-481-4271)



httP://www.forest.go.kr